##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52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중 "일시 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휴업) 변호사는 <u>일시 휴업</u>	제16조(휴업) <u>30일 이상</u>
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	<u> 휴업</u>
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	
다.	